



국토교통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한국감정원 2018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송부

1. 평소 건축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 제25조제14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16.8.3, 건축정책과-11817호)과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대가산정 시,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한국감정원 2018년도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도 건물신축단가표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장), 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장), 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장), 인천광역시(건축계획과장), 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장), 강원도지사(건축과장), 대전광역시(주택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장), 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 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상남도지사(건축주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장), 대한건축사협회장, 한국건축가협회장, 새건축사협의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대한건축학회

주무관 정치영 시설사무관 최대경 건축정책과 과전결 2019.5.3.
장 남영우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2653 (2019. 5. 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752 팩스번호 044-201-5574 / jcheey@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한국감정원 2018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건축법」 제25조제14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 가능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용 도	공사비(원/㎡)
다가구 주택	1,472,500
아파트	1,408,333
연립 주택	1,682,100
다세대 주택	1,333,000
다중주택	1,431,833
오피스텔	1,501,833
근린생활시설	1,217,900
창고	632,714
공장	765,125

<산출근거>

1. 본 자료는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2018년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재산출하였음
2. 산출방식 : 용도별 평균값(건물표준단가+부대설비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였음

<적용사항>

1.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 기준)
2. 적용시점 : 2018년도 용도별 평균값을 시달한 이후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함
3. 공사비는 공사내역서 상의 실 공사면적* 단가(㎡)를 산출한 것을 말함
 - * 실 공사면적은 필로티 및 발코니 면적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함
4. 창고, 공장의 경우 부대설비값에서 냉·난방설비 값을 제외하여 산출함
5. 고급형 연립주택에서 일반형 연립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고급형과 일반형 연립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산출함

※ 아파트는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